



호주 정부, 해운업 독금법 적용제외 이해

SAL 독금법 포괄적용제외 현상유지 요청

호주화주협회 폐지보다 유지쪽으로 정리

호주의 선사연합체인 '선박·오스트레일리아·리미티드'(SAL, 외국선사도 가입)의 대표단은 최근 호주 정부가 검토중의 외항선사간 협정 등에 관한 독점금지법의 포괄적용 제외제도의 재검토에 대해 호주 각료들에게 현상 유지를 요청 했다.

선사 관계자에 의하면, SAL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호주 정부측에서는 이또한, 또한, 호주의 하주단체도 대체적으로 현상유지의 경향을 견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으며, 조만간 호주 정부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방침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독금법 재평가 논의에서 선사와 화주들의 의견은 어느정도 일치한 형태이지만, 정부의 결론에 반영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외항선사간 협정 등의 독금법 포괄적용 제외제도

를 규정하는 '1974년 거래 관행법 제 10장'에 대해 호주의 정부자문기관인 생산성위원회는 중간보고를 통해 포괄적용 제외제도를 폐지하여 개별심사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방침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지난 2월 하순 정부에 최종적으로 보고했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정부의 결론에 맡기고 있다.

SAL 등은 이번 동위원회의 최종보고가 중간보고를 답습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법장관, 부수상겸운수상, 산업·관광장관들에게 현행 제도의 유지를 요청했다.

정부측은 오는 6월을 목표로 결론을 낼 의향을 나타내는 것과 동시에, 선사 사이트의 생각에 일정한 이해를 나타냈다고 한다.

미 법원, 선박의 밸러스트수 배출금지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 사전허가 필수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판사는 최근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는 선박의 밸러스트 수(水)를 항만에 더 이상 배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데는 줄무늬 담치와 중국 참게(mitten crab) 등 생태계 위해 생물종이 세계 곳곳에서 선박의 밸러스트 수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잔 일스튼 판사는 환경단체들이 유해 생물종의 유입으로 미국의 토착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우려되며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청정 수질법 허가 요건에서 밸러스트 수를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법률의 적용을 면제하는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한 일스튼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환경보호청이 밸러스트 수 배출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한 것은 입법 당국의 권한을 넘는 행위라고 밝히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염물질 배출 허가 프로그램에서 점 오염원의 적용을 배제하는 권한은 EPA가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북서 환경보호단체와 해양보전협회, 수질 보호 북태평양 협회 등은 지루한 법정 공방전 끝에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하자 큰 만족감으로 표시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EPA가 미국 연안은 물론 오대호 지역에 유해 생물종이 유입되도록 방치한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